아름다운 생복한 사 입

제2019-225호 2019년 12월 2일(월)





보

시 정 지 표

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

■ 발행인: 여수시장 ■ 발행소: 공보담당관실 /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 ☎ 659-3025 FAX) 659-5803

시 고 0 여수시 고시 제2019- 353호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3 제2019- 359호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 0 여쉬 과 8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 수립. 0 여쉬 과 제2019- 360호 11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0 여수시 고시 제2019- 361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12 0 여수시 고시 제2019- 407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고시 14

공 고 0 여쉬 공고 제2019-2872호 도로구역(변경)결정 및 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16 0 여쉬 공고 제2019-2878호 도로지정공고[덕충동 676-2번지] 19 0 여쉬 공고 제2019-2880호 여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변경(안) 열람공고 20 0 여쉬 공고 제2019-2887호 도로지정 공고(화장동 294-4) 24 0 여쉬 공고 방치선박 제거 공고 25 제2019-2893호 0 여수시 공고 제2019-2896호 「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0

회				
람				

여수시 고시 제2019 - 353호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및 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, 주차장)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- 1. 사업시행지 위치: 여수시 신기동 112-1번지 일원
- 2. 사업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2-850, 주차장: 54)사업

나. 명 칭: 신기동 공영주차장 신축공사

- 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: 1,919㎡(도로 285.7, 주차장 1,633.3)
- 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여수시장

나. 주 소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5. 사업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

가. 착수예정년월일: 2019.11.(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)

나. 준공예정년월일: 2020.12.31.
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: 붙임
- 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해당없음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☎061-659-4013) 및 교통과(☎061-659-414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

○ 토지조서

	토 지 :	소 재 지			지 적(෦		소 유 자			이 해 관	계 인	비
연번	위치	번 지	지목	·太0	편(주자장	입면적 도로	주 소	성 명	권리의 종류	성 명	주 소	고
1	신기동	112-1	차	782.6	755.5	27.1		여수시				
2	신기동	151	모	2750.7	39.6			여수시				
3	신기동	152	버	3887.1	158.0			여수시				
4	신기동	113-15	차	444.7	444.7			여수시				
5	신기동	113-14	대	228.5	228.5		여수시 웅천동 627	문철수	근저당권	여천농업 협동조합	여수시 학동 42	
6	신기동	112-3	대	199.8		115.0	여수시 신기남1길 26-9(신기동)	김기윤	근저당권	여수중부 새마을금고	여수시 총무로27-2(교동)	
7	신기동	112-14	대	194.0	7.0	143.6	여수시 봉계동 757	민양기 구산업				
계		7 필지		8,487.4	1,633. 3	285.7.0						

○ 지장물조서

연	소	대지	물건의	그 굿 미		소	유 자		이해관계임	인	비
번	위 치	번 지	출간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(^{m²})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	성명	주소	고
			1층점포	철근콘크 리트	113.16						
			1 층주 택	조립식판 넬	23.1						
			1층 비가림시설	판넬조	16.8						
				경량철골							
	신	112	2 층주 택	및	84.25		여수시	근저	여수중부	여수시	
1	기	-3		벽돌조		김가윤	신기남1길	당권		충무로	
	동	-3	2층	조립식판	10.8		26-9(신기동)	당면	새마 을금 고	27-2(교동)	
			보일러실	넬							
			정화조		1식						
			2층가추	아크릴	3식						
			2층	아크릴	 1식						
			비가림시설	71-2	' '						
			2 층 난간시설	스덴	1식						

04	소7	대지	27.0 1	7.70		소	유 자		이해관계약	인	
연 번	위 치	번 지	물건의 종류	구조및 규격	수량(m²)	성명	주소	권리의 종류	성명	주소	비 고
			2층계단	대리석20 단	1식						
			바닥	단일포함 콘크리트 17×1.8, 2.1×4.7	2식						
			담장	타일포함 벽돌높이 1.5×17	1식						
			우편함 영업보상 간판	쏠로아떼	1식 2식 4식						
			에[어콘및 시설(주택 포함)		3식						
			수도	스킨	2식						
2	신 기	112	영업보상 간판	케어차옴	1식 5식			임차인	남다연	여수시 신기남 1 길	
2	기 동	-3	에어콘 및					김사인	검나언	전기담1월 26-9(신기동)	
	0		시설		1식						
			1층점포	철근 <u>콘</u> 크 리트	107.9						
			1층점포	철근콘크 리트	18.86						
			1층화장실	벽 <u>돌</u> 슬래 브	1.8						
			2 층주 택	벽 <u>돌</u> 슬래 브	82.91						
			2 층주 택	벽 <u>돌</u> 슬래 브	24.85						
			2층보일러 실 및 창고	조립식판 넬	10.56						
			대문	스덴목조 포함슬래 브	1식						
			정화조		1식						
			초인종 및 우편함	콘크리트 3단	1식						
3	신	112	 1층계단	대리석 스덴난간	1식	민양기	여수시 신기남1길3				
3	기 동	-14		포함16단 콘크리트		구산업	0-10 (신기동)				
			2층계단	스덴난간 포함17단	1식						
			1층수도관 미 시선		1식						
			및 시설 1층화단	7.5×1	1식						
			1층계단		1식						
			및 창고	콘크리트							
			바닥	(16.6×3), (8.7×1)	2식						
			에어콘	, ,	2식						
			실외기 담장	벽돌 및 판넬조 (14<높이 2), 벽돌	2식						
				(9>높1.5)							

	소 ⁷	대지				소	유 자		이해관계	ρl	
연	위	<u>"</u> 번	물건의	구조및	수량(㎡)			권리의			비
번	치	지	종류	규격	. ,	성명	주소	종류	성명	주소	고
			2층비가림 시설	판넬조	1식						
			2층주택	경량	1식						
			베란다시설	철골조	174						
			옥상 빨래건조대	철재	3식						
	신		영업보상	효정혜어	1식					여수시	
4	기	112	간판		3식	-		임차인	김효정	신기남 1 길	
	동	-14	에어콘		1식					30-10(신기동)	
	신		실외기							여수시	
5	기 동	113 -14	동산이전비	웅비 참살이	1식			임차인	문철호	신기남1길 26-10(신기동)	
			영업보상	로이스	1식						
6	신 기	112	간판		1식			임차인	이윤애	여수시 신기남1길	
6	기 동	-14	에어콘		2식			김사인	이판에		
	5		실외기							30-10(신기동)	
			1층 점포	철근콘크 리트	133.65			전세권 설정	한덕주	여수시소라면 달천1길20-2	
			1층 창고	판넬조	15.2						
			1층 창고	스레트 및 썬라이트	28.9	-					
			4 초 뒤지시	조립식	2.00						
			1층 화장실	판넬	3.08						
			1층 화장실	벽돌	4.94						
			10 102	슬래브							
			2층 주택	벽돌 슬래브	133.65						
			0 ÷ 7 □	경량	10.0						
			2층 주택	철골조	13.6						
				철재							
			대문	구조믈	1식						
				포함			الملا				
	신	112	정화조	대리석	1식		여수시 시기나1기				
7	기	113 -14	1층 계단	내리적 18단	1식	문철수	신기남1길 26-10(신기	근저	여천농업	여수시	
	동	-14		콘크리트		-	26-10(신기 동)	당권	여선 o u 협동조함	학 동 42	
			2층 계단	17단	1식		o)		80-6	7072	
			2층 통로	콘크리트	1식]					
			장독대	콘크리트	1식						
			에어콘		1식						
			실외기 화단		1식	-					
			의 의한 오디/관목			-					
			서		2주/3주						
			빨래건조대		5식]					
			물탱크	FRP	1식						
				콘크리트							
			바닥	(19×1.7,	3식						
				17×1.5,7							
				.6×2) 벽돌		1					
			담장	역출 (19×높이	1 식						
				1.7)	'¬						
\Box				1.1)		1					

위 치 도



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, 제100조 및「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」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계획시설(도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을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- 1. 사업시행지 위치(변경없음): 여수시 신월동 산237번지 일원
- 2. 사업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가. 종 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소로 2-1032)사업

나. 명 칭: 여수시 신월동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개설

3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)

가. 면 적: <mark>기정 1,454㎡</mark>→ 변경 1,494㎡(증 40)

나. 규 모: L=128m, B=10m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없음)

가. 성 명: ㈜세일산업개발 대표이사 나연희

나. 주 소: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78번길 16, 3층(농성동)

5. 사업시행기간(변경): _ 기정: 2019. 3.21.~2020.12.30.

└ 변경: 2019. 3.21.~2022.12.30.
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(변경): 붙임
- 7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(변경없음):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관리청인 여수시로 무상귀속 됨.
- 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2061-659-40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.지번.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소유자.권리자의 성명.주소

○ 토지조서

ਸ਼੍ਰੇ ਨ	소재지		지번	지목	지적	면적(m²)	편	입면적(m	n°)	よりつ	スム	비고
빈오	2M/	당초	변경		당초	변경	당초	변경	증감	소유자	주소	미끄스
합	계	20	21	필지	32,436	28,165	1,454	1,494	40			
1		78	78–31	답	430	188	188	188		주다올 부동산신탁 주택도시 보증공사	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-19 산연빌딩 12층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135.54/430 294.46/430
2		78-1	78-33	도	76	11	12	11	-1	임윤택	여수시 신월동 101	
3		78–5	78-34	전	78	7	7	7		(주다올 부동산신탁 임현섭	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-19 신안빌딩 12층 여수시 여서동 489-1	46.28/136 89.72/136
4		78–6	78-35	답	111	1	1	1		여수시	현대아파트101-701	09.72/130
4		76-0	76-33	H	111	1	1	1		역무시 주택도시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	
5		78-12	78-36	전	119	81	80	81	1	보증공사	(문현동, 부신국제금융센터)	
6		78-18	78–37	전	185	11	9	11	2	주다올 부동산신탁	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-19 신안빌딩 12층	
7		78-19	78-38	전	192	30	37	30		(주다올 부동산신탁	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-19 신안빌딩 12층	
8		10 19	78-39	겓	192	7	37	7		㈜다올 부동산신탁	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-19 신안빌딩 12층	
9		78-20	78-40	대	212	31	32	31	-1	주택도시 보증공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근저당 (주)중문산업 개발
10	여	78-21	78-41	대	218	17	19	17	-2	권동업	전남 여수시 신월3길 18 (신월동)	
11	수 시	78-23	78-42	도	1,031	39	39	39		국 (건설교통부)		
12		78-24	78-24	도	516	516	516	516		주택도시 보증공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
13	신 월	78-27	78-44	임	123	59	59	59		주택도시 보증공사	부산량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
14	농	78–28	78–45	임	345	89	89	89		이방수	여수시 신월동 223-16 부산광역시남구문현금융로 40	116/345
14		10-20	70-40	H	340	99	69	69		주택도시 보증공사	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229/345
15		79–1	79-1	도	8	8	8	8		㈜다올 부동산신탁	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-19 산안빌당12층	
										차재진	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산정 로 80,6동807호	1/3
16		80-2	80–51	답	46	14	14	14		정태식	광주광역시 북구 용봉택지로 16, 101동104호	1/3
										황현	광주광역시 서구 유덕로51번 길17 (유촌동)	1/3
17		80-12	50-52	도	24	13	13	13		㈜다 <u>올</u> 부동산신탁	서울 강남구 대치동 943-19 신안빌딩 12층	
18		83	83-20	도	1,124	6	8	6	-2	여수시		
19		1801	1801-3	도	595	34	34	34		국 (국토교통부)		
20		산223 21	산223 21	임	226	226	183	226	43	주택도시 보증공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
21		산237	산237	임	26,777	26,777	106	106		주택도시 보증공사	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(문현동, 부산국제금융센터)	

○ 지장물조서

소재지	지번	물건의	구조 및 규격	단위	슏컁		소유자	비고
25/1/	/1번	종류			78	성명	주소	1 1117
			감무	주	1		여수시 신월동	
	78-39	수목	신수유	주	1	이방수	223-16	
			뿡무	주	2		-	
		세면장	판넬조, 판넬지붕 단층	m²	1		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,	
	78-40	담장	블럭조	식	1	유금성분	1207호	
		ᄰ		주	1		(수기동, 제일오피스텔)	
	78-41	창고	조적조, 슬레이트 단층	m²	16	권동업	여수시 산월3길, 18	
		담장	블럭조	식	1		(신 월동)	
여쉬	80-52	ᄰ	모과-무	주	1	임현태	여수시 신월4길 17-2(신월동)	
신월동		창고	블럭슬레트	m²	35			
		울타리	파 프 조 그물망	식	1			
			감무	주	6			
	23000 01		대취무	주	2	م ادار م	여수시 신월동	
	신223-21	쓚	무화과무	주	2	이빙수	223-16	
		17	복숭아나무	주	1			
			매실나무	주	1			
			두창나무	주	1			

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 수립 ,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

「도시개발법」제3조 및 제4조,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, 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,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[전라남도 고시 제 2019-315호(2019.10.24.)]된 여수 죽림1지구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- 1. 여수 죽림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(변경) 및 개발계획(변경) 수립,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: 게재 생략
- 2. 관계 도서는 여수시 공영개발과(061-659-4578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.

여수시 고시 제2019 - 361호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

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7조, 제19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「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」제2조에 따라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- 1. 사업의 명칭: GS칼텍스 ON-SITE PLANT PROJECT공장증설
- 2.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
 - 가. 성 명: 대성산업가스(주) 대표이사 김형태, 김신한
 - 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(신도림동, 다큐브시티)
- 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
 - 가. 사업의 목적: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질소 및 산소 사용량 증가에 따라 저장 및 공급공장 증설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원활한 공급을 위함
 - 나. 사업의 개요: 저장 및 공급 공장증설 8,403㎡
- 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
 - 가. 위 치: 여수시 중흥동 1445번지 일원
 - 나. 면 적: 8,403㎡
- 5. 사업시행기간
 - 가. 착수예정년월일: 2019.12.(실시계획승인일로부터)
 - 나. 준공예정년월일: 2021. 4.30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: 붙임
- 7.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: 해당없음
- 8. 국. 공유지 관리처분계획: 해당없음

9.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: 해당없음

10.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조서

■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조서

구분	도면표시 시설명	시서며	위 치		면 적 (㎡)		최초 결정일	비고
구군	번 호	시설당	TI AI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0177
신설	4	가스공급설비	여수시 중흥동 1445번지 일원	-	증)8,403	8,403	_	

■ 가스공급설비 결정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 설 명	변경내용	변 경 사 유
4	가스공급설비	가스공급설비 신설: 8,403㎡	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(저장시설) 설치를 위함

11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2061-659-40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

연번	위 치	지번	지목	지 적(㎡)	신청면적(㎡)	소 유 지	-	비고
선인	기 시	시민	시속	시 작(")	신성단석(")	주 소	성명	
	계	2필기	IJ	19,533.6	8,403		_	
1	여수시 중흥동	1445	장	16,716.6	6,456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(역삼동)	지에스칼텍스(주)	
2	여수시 중흥동	1445-1	장	2,817	1,947	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08(역삼동)	지에스칼텍스(주)	

여수시 고시 제2018 - 407호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 승인 고시

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(변경)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17조, 제19조의 2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「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」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 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- 1. 사업의 명칭(변경없음): 웅천지구 택지조성사업
- 2.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(변경없음)

가. 성 명: 여수시장

나. 주 소: 여수시 시청로 1(학동)

3. 사업의 목적 및 개요(변경없음)

가. 사업의 목적

- 1) 여수시 새로운 중심부로 떠오르는 웅천지구를 친환경적인 복합 주거기능의 신시가지로 개발
- 2) 여수 국가산업단지 확장에 따른 종사자 및 이주민에게 안정적인 주택지를 공급
- 나. 사업의 개요: 택지개발 2,800,439㎡
- 4.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(변경없음)

가. 위 치: 여수시 웅천동 일원

나. 면 적: 2,800,439㎡

5. 사업시행기간(변경): Γ 당초: 1992.12.21.~2018.12.31.

└ 변경: 1992.12.21.~2022.12.31.

	 구 분		사업	기간	면적	비고
	구 표		기정	변경	29	0177
1	구0	구	2003~2010년	2003~2010년	692,802.5 m²	준공
2	구0	구			1,204,965.9 m²	
-	2-1공구				20,685.4 m²	
_	2-2공구				44,294.9 m²	
_	2-3공구		2009~2018년	2009~2022년	597,541.4m²	변경
-	2-4공구		2009~2010년	2009~2022년	9,711.0 m²	26
_	2-5공구				211,527.8 m²	
_	2-6공구				306,219.0 m²	
_	2-7공구				14,986.4 m²	
3	공	구	2009~2016년	2009~2016년	902,670.6 m²	준공
	합 계				2,800,439 m²	
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(변경없음): 게재생략
- 7.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: 게재생략
- 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(659-4013) 및 공영개발과(061-659-4578)으로 문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.

도로구역 (변경) 결정 및 인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

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추진 중인「2019년 여수 남면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」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(변경) 결정 전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」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·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공고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, 또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을 조사하고자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9조,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출입 통지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여 수 시 장

1. 사업의 개요

○ 사 업명: 2019년 여수 남면지구 굴곡위험도로 개선사업

○ 위 치 : 여수시 남면 심장리 산266-1도 번지 일원

○ 사 업 내 용 : 지방도 863호선, 선형개선 L=100m, B=9.0m

○ 사업 시행자 : 전라남도지사(도로관리사업소)

○ 사 업 기 간 : 착공일로부터 6개월간

2. 도로구역 (변경)결정사유

○ 도로 선형 불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아 도로 개선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조성

3. 공람 장소 및 기간

○ 기 간 : 2019. 12. 2. ~ 2019. 12. 16. (14일간)

○ 장 소 : 여수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, 여수시 도로과

4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○ 제 출 기 간 : 열람 기간 내

○ 제 출 방 법 :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(붙임)

5. 토지출입내용

○ 출 입 기 간 : 2020. 1.~ 사업종료시 까지(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)

○ 출 입 토 지 : 별첨 토지조서 참조

○ 출 입 사 유 : 토지 및 물건의 기본조사, 측량, 감정평가 등

6. **토지 및 지장물 조서** : 붙임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로과(061-659-4065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

일련	T U	T L D	지 적	편입		소 유 자		관 계 인		
번호	지 번	지목	(m²)	면적 (m²)	성 명	주 소	성 명	주 소	권리관계	비고
1	산 266-1	도	508	47	전라남도	국				
2	325-2	전	133	52	전라남도	국				
3	325-1	도	372	324	전라남도	국				
4	324-11	전	144	144	전라남도	국				
5	324-6	도	6	6	전라남도	국				
6	산 264-2	년	485	485	김**	남면 심장리 2**				
7	산 264	임	110	110	김**	남면 심장리 2**				
8	324-2	전	2,695	387	김**	전라남도 여수시 예울마루로30, 1** 동 7**호(웅천동, 웅천**아파트)				
9	324-10	전	45	45	전라남도	국				
10	317-7	전	90	41	전라남도	국				
11	317-6	도	788	455	전라남도	국				
12	산 263-2	임	230	11	전라남도	국				
13	산 263-1	도	309	20	전라남도	국				
소계	13필지		5,915	2,127						

번호						3		서		
면오	위	치	지번	지목	구 분	수 량	주 소	소유주	BI.	ュ
1 S7	ΓA0+050	좌	산264-2	도	전력주	1	여수시 남면 심장리 2**	김**		
2 S1	ΓA0+080	좌	317-6	모	전력주	1	국	전라남도		

[여수시 공고 제2019 - 2878호]

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덕충동 676-2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 지정 공고 내역

도로위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㎡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덕충동 676-2	6	1	6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여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변경(안) 열람공고

여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변경(안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5조,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- 1.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- 나. 용도지역 · 용도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- 1) 용도지역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- 2) 용도지구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 -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- 1) 교통시설

(1) 도로 결정(변경)조서

		규	모			연장			사 용	주요	최초	비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기능	(m)	기 점	종 점	형태	경과지	결정일	고
기정	소로	3	824	6-10	국지도로	519	거문리 87-40도	거문리 91-2대	일반도로	_	04.4.16 (여고제24호)	
기정	소로	3	825	6	국지도로	474	거문리 93대	거문리 106-32잡	일반도로	_	04.4.16 (여고제24호)	
기정	소로	3	826	6	국지도로	231	거문리 106-11대	거문리 111-18대	일반도로	_	04.4.16 (여고제24호)	
기정	소로	3	827	6	국지도로	342	거문리 111-18대	거문리 116-2잡	일반도로	_	04.4.16 (여고제24호)	
기정	소로	3	831	6	국지도로	89	거문리 89-11대	거문리 91-2대	일반도로	_	04.4.16 (여고제24호)	
기정	소로	3	832	4	국지도로	79	거문리 106-16대	거문리 111-17대	일반도로	_	04.4.16 (여고제24호)	
기정	소로	3	833	6	국지도로	396	거문리 128-4대	거문리 142전	일반도로	_	04.4.16 (여고제24호)	
변경	소로	3	833	6	국지도로	273	거문리 125-4전	거문리 142전	일반도로			
변경	소로	2	A	8	국지도로	123	거문리 128-4대	거문리 125-4전	일반도로			

○도로 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도로명	변경후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소로 3-833	소로 3-833	·노선분리 및 선형변경 -소3-833→소3-833, 소2-A ·노선분리구간 폭원확장 - 6m → 8m	·면사무소 주진입로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 한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 및 일부구간 폭원 확장

2) 유통 및 공급시설(변경없음)

3) 공공·문화체육시설

(1)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도 면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 적(m')			최초	비고
1 &	표시번호	기결정	시설의 세단	Π Λ	기정	변경	변경후	결정일	H 14
기정	26	공공청사	보건소, 해양경찰서	거문리87-53잡 일원	1,108	_	1,108	전고-313호 11.09.09	
변경	27	공공청사	면사무소, 파출소	거문리 126대 일원	2,224	증)1,064	3,288		순수면사무소 부 :1,966 m²

○ 공공청사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표시번 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27	공공청사	선형변경 및 면적확대 (A=2,224㎡→3,288㎡)	 삼산면사무소 신축을 위한 인접부지 매입에 따른 청사공간 확보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질 제고

(2) 학교(변경없음)

4) 환경기초시설(변경없음)

도면	ルユ		면 적(m')		Ž	힉 지			
포진 번호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	면 적(m')		비고
12	킨포	∠ 1. 0	12.0	1270 T	71 71	기정	변경	변경후	
1	1	22,291	_	22,291	거문리 83대 일원	22,034	_	22,034	
4	4	1,450	_	1,450	거문리 91-3대 일원	1,450	_	1,450	
5	5	5,890	감)540	5,350	거문리 66대 일원	5,890	감)540	5,350	청사확대 및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감소
5-2	5-2	360	감)360	-	거문리 125-5전 일원	360	감)360	_	청사부지편입
7	7	2,920	감)34	2,886	거문리 111-8대 일원	2,920	감)34	2,886	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
9	9	5,920	_	5,920	거문리 106-2대 일원	5,920	-	5,920	
9-1	9-1	620	_	620	거문리 106-35대일원	620	_	620	
11	11	1,950	_	1,950	거문리 111-7대 일원	1,950	_	1,950	
14	14	6,210	_	6,210	거문리 55-3대 일원	6,210	_	6,210	
15	15	4,760	감)355	4,405	거문리 122대 일원	4,760	감)355	4,405	청사확대 및 도로 선형변경에 따른 면적감소

○ 상업시설용

드며	가구		면 적(m²)			획 지			
	번호	기정	변경	변경후	위치	-) z)	면적(m')	내거중	비고
		, -			1 1	기정	변경	변경후	
3	3	3,640	_	3,640	거문리87-42대 일원	3,640	_	3,640	
6	6	780	_	780	거문리108-1대 일원	780	-	780	
8	8	600	감)17	583	거문리110-2대 일원	600	감)17	583	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
10	10	240	_	240	거문리111-6대 일원	240	-	240	
16	16	660	_	660	거문리130 일원	660	ı	660	

○ 녹지용지

도면	ルユ		면 적(m')			획 지			
노인 번호	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		비고	
킨소	킨쏘	7178	11/8	2/07	# 4	기정	변경	변경후	
1-3	1-3	1,660	감)96	1,564	거문리 112잡 일원	1,660	감)96	1,564	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감소
2	2	995	_	995	거문리 86-34잡 일원	995	_	995	
2-1	2-1	338	_	338	거문리 87-54제 일원	338	_	338	
12	12	5,590	_	5,590	거문리 106-36잡 일원	5,590	_	5,590	
13	13	27,049	_	27,049	거문리 76-1전 일원	27,049	_	27,049	

○ 공공용지 결정조서

드며	가구		면 적(m')			획 지			
	변호 변호	기정	변경	변경후	위 치		면적(m')		비고
킨모	인모	/1/8	11.0	U/0 T		기정	변경	변경후	
1-1	1-1	1,108	_	1,108	거문리 87-53잡 일원	1,108	_	1,108	- 공공청사(26)
1-2	1-2	5,440	_	5,440	거문리 136학 일원	5,697	_	5,697	- 학교(107)
2-2	2-2	2,069	_	2,069	거문리 87-53잡 일원	2,069	_	2,069	- 공공용지
5-1	5-1	2,224	증)1,064	3,288	거문리 126대 일원	2,224	증)1,064	3,288	공공청사(27)
13- 1	13- 1	205	_	205	거문리 116-1 일원	205	_	205	- 통신시설(4)
13- 2	13- 2	2,536	_	2,536	거문리 116-2 일원	2,536	_	2,536	-폐기물처리시설

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(변경없음)

2. 여수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 변경 도면(변경): 게재생략

3. 공고기간: 2019.12. 2. ~ 2019.12.16.(14일간)

4. 열람장소: 여수시청 도시계획과

5. 열람도서: 게재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

6. 의견제출: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

7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도시계획과(逾061-659-4012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여수시 공고 제2019 - 2887호]

도로지정 공고

여수시 화장동 294-4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,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·공고합니다.

1. 도로지정 공고 내역

도 로 위 치	도로길이 (m)	도로너비 (m)	도로면적 (m²)	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	비고
화장동 294-21	11.6	7	84	도로대장 참조 (허가민원과 비치)	

2. 관련도서 : 생략(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)

3. 기타사항

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(061-659-411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. 12. 2.

여 수 시 장

방치선박 제거 공고

우리시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는 선박이 해양오염 발생 우려가 있으며, 지역주민의 안전사고 위험 등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므로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19년 12월 17일(월)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여 수 시 장

- 1. 공 고 기 간 : 2019. 12. 2. ~ 2019. 12. 17.(15일간)
- 2. 제거대상선박 : 3척(붙임 참조)
- 3. 소유자(점유자)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
 - 가.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「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나.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)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다.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(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)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 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 려드립니다.
- 4. 기타사항 : 문의사항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(☎061-659-3973)로 연락바랍니다.

제거대상 선박 내용

관리번호	선명	선질	톤수	방치장소
2019-1	미상	목선	1톤급	여수시 웅천동 1908 앞 지선 공유수면
2019-2	미상	목선	1톤급	여수시 웅천동 1908 앞 지선 공유수면
2019-3	미상	목선	1톤급	여수시 경호동 산86번지 지선(송도)

[별지 제8호서식]

여수시 공고 제 2019- 2893호 방치선박제거공고 발견장소 여수시 웅천동 1908(장도) 앞 지선 공유수면 선명(명칭) 선박(어선)번호 미상 미상 선 박 선 적 항 미상 톤 1톤급 제 원 주요치수 관리번호 곾 리 청 여수시청 제2019-1호 제거 예정일자 2019년 12월 17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 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 제 거 방법 공매장소 및 일시

방치선박 전경사진

입찰 보증금



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9년 12월 17일(월)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여 수 시 장

(담당자 : 해양항만레저과 061-659-3973)

[별지 제8호서식]

여수시 공고 제 2019- 2893호 방치선박제거공고 발견장소 여수시 웅천동 1908(장도) 앞 지선 공유수면 선박(어선)번호 선명(명칭) 미상 미상 선 박 <u>1</u>톤급 선 적 항 미상 톤 제 원 주요치수 관리번호 곾 리 청 여수시청 제2019-2호 제거 예정일자 2019년 12월 17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 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 제 거 방법 공매장소 및 일시 입찰 보증금

방치선박 전경사진



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9년 12월 17일(월)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여 수 시 장

(담당자 : 해양항만레저과 061-659-3973)

여수시 공고 제 2019- 2893호방치선박 제거공고발견장소여수시 경호동 산86번지 지선(송도)선 박선명(명칭)미상선박(어선)번호미상선 적 항미상톤수1톤급

관 리 청 여수시청 관리번호 제2019-3호 제거 예정일자 2019년 12월 17일 이후 (공고 종료 이후)

제 거 방법 해체 및 폐기처리(직권제거)

제 거 방법 해제 및 페기저디(직권세기 공매장소 및 일시

입찰 보증금

주요치수

제 원

방치선박 전경사진



위 방치선박은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19년 12월 17일(월)까지 여수시 해양항만레저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여 수 시 장

(담당자 : 해양항만레저과 061-659-3973)

여수시 공고 제2019 - 2896호

공 고

「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12월 2일

여 수 시 장

「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 개정(안) 입법예고

1. 제정 이유

○ 출산장려 신규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례 정의 및 문구 수정, 구비서류 정비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여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

2. 주요 내용

-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정비(안 제5조, 6조)
 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통장사본 삭제
 - 계좌변경신청 근거 마련
-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근거 마련(안 제9조)
 - 임신 축하를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임신확진비 지원
 -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기저귀 지원

- 기존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 규정 마련(안 제9조, 제9조)
 - 출산 축하선물,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등의 지원대상·지원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 명시
- 조례 정의 등 용어 및 문구 수정
 - "입양아" 정의 삭제
 - 조례 내 용어 통일 (첫째아 가정 → 첫째아 <u>출산</u>가정 등)
- 3. 제정 조례안 : 별첨
- 4. 예고기간 : 2019. 12. 2. ~ 12. 21. (20일간)

5. 의견제출

- 가.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(건강증진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나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
- 다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- 라. 기타 참고사항 등
 - 1) 주 소 : 우)59675 여수시 시청서4길(학동) 건강증진과
 - 2) 전 화: 061)659-4264, 팩스: 659-5840
 - 3) 이메일 : sos11350@korea.kr
 - 4) 의견제출방법 : 서면, 팩스, 이메일 제출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ਂ	여수시	저출산대책	및	출산장려	지원	조례	일부개정(안)
○ 성명(단체	명) :						
○ 주	소 :						
○ 전 화 번	호 :						

조례안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	
- 11C 0 1E 110	찬성	반대	12(111)		

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모자보건법」및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에 따라 저출산대책 및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출산장려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출생아"란 여수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출생후 1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출산장려금"이란 출산을 장려하고, 출산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
- 3. "첫째아 출산가정"이란 첫째아를 출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.
- 4. "둘째아 출산가정"이란 한 자녀를 양육하면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.
- 5. "셋째아 이상 출산가정"이란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.
- 6. "다태아"란 한 번에 둘 이상의 태아가 임신이 되어 있는 상태로 쌍둥이, 세쌍둥이 등을 말한다.
- 제3조(출산장려금 지원대상) ① 여수시장(이하∨"시장"이라 한다)은 신청인이

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아의 부 또는 모, 친권자, 입양을 한 사람(이하 > "부모 등"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그 자녀가 1세 미만일 것
- 2.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에 거주할 것. 다만, 그 기간이 1년 미만인경우에는 부모 중 1명 이상의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였을 것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이 된다. 다만, 이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.
- 1. 부 또는 모의 사망, 이혼, 직업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모가 함께 시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그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 는 경우
- 2. 제1호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친권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
- 3.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
- 4.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(이하 "영아"라고 한다. 이하 같다)를 입양하는 경우. 다만, 이미 출산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- 제4조(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등)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각 호의 금액은 「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되는 신생아양육비 30만 원을 포함한 다.
 - 1. 첫째아 출산가정 : 100만 ∨ 원
 - 2. 둘째아 출산가정 : 300만 ∨ 원

- 3.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: 500만 ∨ 원
- ②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첫째아 출산가정 : 일시금으로 지급
- 2. 둘째아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그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 원씩 2년간 지급
- 3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: 태어난 해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 원씩 4년간 지급
- ③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어난 순서대로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.
- ④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, 부 또는 모의 전혼∨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한다.
- 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아가 태어난 다음 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장려금을 신청한 해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, 그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원 씩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.

제5조(출산장려금 지급신청 등) ① 출산장려금 지급 > 신청인은 부모 등으로 한다.

- ② 읍·면·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지원 대상일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가정에 알려야 한다.
- ③ 부모 등이 출산장려금을 지급 \(\text{\Pi}\)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1.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- 2. 제3조제2항에 해당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
- ④ 제4조제2항제2호·제3호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분할 지급 시 마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최초 신청할 때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할 지급 신청을 생략할 수 있 다.
- ⑤ 시장은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최초 신청 당시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였거나 최초 신청 이후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지급 시 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수 있다.
- ⑥ 제3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는 행정안전부 예규「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.
- 제6조(출산장려금 지급절차) ① 읍·면·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- 1.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
 - 2.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
 - 3.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
 -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출산 장려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,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포함하여,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③ 읍·면·동장은 매월 5일까지 해당 월의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의 신청서 또는 명단을 보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.

- ④ 보건소장은 읍·면·동장으로부터 이송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,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⑤ 출산장려금은 제3항제1호에 따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, 지급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한다.
- ⑥ 출산장려금 지급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출산장려금 업무관리 시 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.
- 제7조(출산장려금 지급중단 및 환수)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·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그 지급을 중단한다.
 - ②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분할지급 대상자의 경우에는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중단 또는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8조(대장의 작성 및 관리) 시장은 출산장려금 접수대장 및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9조(출산장려 시책사업) ①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 - 1. 임신·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, 교육 및 홍보사업
 - 2. 「모자보건법」 제3조의 2에 따른 "임산부의 날" 행사 개최

- 3.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·경제·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, 저출산·고령화 대응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"인구의 날"행사 개최
- 4. 새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"출산가정 방문의 날" 지정 운영
- 5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출산장려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가족, 출산가정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.
- 제9조의2(출산장려 지원사업) ① 시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가정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출생아의 부모 등에게 출산 축하선물 지원
 - 2. 출생아가 있는 가정(이하 "출산가정"이라 한다)의 산후조리 비용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의 일부 지원
 - 3.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 확진비 지원
 - 4.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기저귀 구입비 지원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출산 축하선물 지원 :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
 - 2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: 산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- 3. 임신 확진비 지원 : 산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 - 4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: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
 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출산 축하선물 지원 : 100천원 상당

- 2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 : 서비스 이용료의 최대 90%까지 지원
- 3. 임신 확진비 지원 : 임신 확진을 위한 검사비 최대 40천원까지 지원
- 4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: 만2세까지 월 64천원 지원

제10조(출산장려시책 법인·단체 등 지원) 시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결혼장려지원 시책사업)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·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- 1. 미혼남녀 결혼장려 사업
- 2. 결혼의 긍정적 가치관 형성 및 가족사항 사회분위기 조성사업
- 3. 그 밖의 결혼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2조(포상) 시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「여수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- 1.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
- 2.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
- 3.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 지한 법인·단체 등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제9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인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임신확진자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<u>정의는</u> 다음과 같다.	<u>元</u>
1. "출생아"란 <u>출생일을 기준으로</u>	1 <u>여수시</u>
<u>여수시</u> (이하"시"라 <u>한다) 관내</u>	<u>한다)</u>
에 출생신고를 한 <u>1년 미만의</u>	<u>사람으로서 출</u>
<u>아이를</u> 말한다.	<u>생 후 1년 미만인 사람을</u>
	<u>.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3. <u>"첫째아 가정"</u> 이란 첫째아를 출	3. <u>"첫째아 출산가정"</u>
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	
말한다.	
4. <u>"둘째아 가정"</u> 이란 한 자녀를	4. <u>"둘째아 출산가정"</u>
양육하면서 둘째 자녀를 출산한	
가정을 말한다.	<u>.</u>
5.・6. (생 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7. "입양아"란 「입양특례법」제2	<u><삭 제></u>
조제3호에서 정한 "입양아동"	
중 출생 한 지 1년 미만인 아이	
를 말하다	

제3조(출산장려금 지급대상) ① 여 7 수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신청인이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 청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영아의 부 또는 모. 친 권자, 입양을 한 사람(이하"부모 등"이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 1. • 2.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② (현행과 같음)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된다. 다만. 이 경우에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거주기간 요건은 갖추어 야 하다.

1. ~ 3. (생 략)

4.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. 다만, 해ㅣ 당 영아의 출생과 관련하여 출 산장려금이 지급된 후 해당 영 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원 | 제4조(출산장려금 지원금액 및 지급 방법 등) ①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. <단서 신설>

제3조(출산장려금 지원대상) ①
<u>지원할</u>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출생 후 1년 미만인 영아(이하 "영아"라고 한다. 이하 같다)를 입양하는 경우. 다만, 이미 출산 장려금이 지급된 영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방법 등) ① ----------. 다만, 각 호의 금액은 「전라남도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원되는 신 생아양육비 30만 원을 포함한다.

1. 첫째아 출산가정 : 100만원 1. ----- 100만 원 2. 둘째아 출산가정 : 300만원 2. ---- 300만 원 3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: 500만원 3. ----- 500만 원 ② 출산장려금 지급방법은 다음 ② 제1항의 출산장려금은 「전라남 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 각 호와 같다. 례」에 따른 신생아 양육비를 포함 한 금액이며, 제1항의 출산장려금 지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2. 둘째아 출산가정 : 태어난 해 1 2. ----- 10 0만 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금액 00만원 지급 후,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은 그 다음 해부터 태어난 달에 100만 원씩 ----3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: 태어난 | <u>해 100만원 지급 후</u>, 매년 생일 해에 100만 원을 지급하고, 나머 지 금액은 그 다음 해부터 태어 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③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③ ----- 태 제1항에 따라 지급하되 태어난 영 어난 순서대로 제1항에 따라 지급 아별로 지원한다. 한다. ④ 출생아의 출산 순위는 부모의 (4) -----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생존 자녀를 기준으로 결정하며, 부 또는 모의 전혼관계에서 출생 ----- 전혼 관계-----한 자녀 중 부 또는 모가 실제 양 육하면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도 자녀

수에 포함한다.

⑤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분할지급할 경우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연 지급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생일 달에 지급한다.

제5조(출산장려금 지급신청 등) ① 제출산장려금 <u>지급신청인</u>은 부모등으로 한다.

- ② 읍·면·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지원 대상 일 경우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가정에 알려야 한다.
- ③ 부모 등이 출산장려금을 <u>지급</u> <u>받으려</u>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출산장려 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1. (생략)
- 2.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계

 좌의 통장 사본
- 3. (생략)
- ④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, 대상자가 출산장려금 지급을 신청할 때 제3항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그

<u>⑤</u> 제	2항제2호	도 및 제	3호에	도 불구
하고	출생아기	가 태어	난 다	음 해에
	장려금을	신청ㅎ	나는 경	
	장려금을	신청한	· · 해어	l 100만
	지급하			
태어닉	 난 달에	100만	원씩	나머지
	을 지급형		·	

5조(줄산장려금 지급신청 등) ①
<u>지급 신청인</u>
②
접수하였을
③ 지급받
<u> </u>
1. (현행과 같음)

- <u><삭 제></u>
 - 3. (현행과 같음)
 - ④ 제4조제2항제2호·제3호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은 분할 지급 시 마다 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제3항에 따라 최초 신청할 때에

다음해부터 분할지급 신청 절차 를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제3조제 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년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⑤ 제3항제1호에 따른 <u>신청서식</u>은 행정안전부 예규「임신·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」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시장 이 정한다.

제6조(출산장려금 지원절차) ① 읍 저 · 면 ·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기관의 공부,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<u>확인</u>
 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
 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
 서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확인

<u>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분</u> 할 지급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.

⑤ 시장은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
고 최초 신청 당시 제3조제2항제1
호에 해당하였거나 최초 신청 이
후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
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 지
급 시 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
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
있다.
<u> </u>
6조(출산장려금 지급절차) ①
O工 <u>(</u>
1. · 2. (현행과 같음)
3 <u>여부</u>
②

란에 기록 및 날인하고, 지급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,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류를 다음 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③ 읍·면·동장은 출산장려금 분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생일전달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보건소장은 읍·면·동장으로 부터 이송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 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급대 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 지 지원대상자에게 <u>지급하여야</u> 한다.

<신 설>

⑤ 출산장려금 <u>지원절차</u>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출산장려금 업무 관리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. 제9조(출산장려 시책사업) ① 시장 제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<u>증명서류</u>
③ 읍・면・동장은 매달 5일까지
해당 월의 출산장려금 분할 지급
대상자의 신청서 또는 명단을 보
건소장에게 송부해야 한다.
4
지원 여부를 결정하고
<u>출산장려금을 지급하</u>
여야
⑤ 출산장려금은 제3항제1호에
따라 신청한 계좌로 지급하며, 지
급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
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 서식으로 신청한다.
<u>⑥</u> <u>지급절차</u>

----- 지원대상 여부

1. 임신·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 1. 임신·출산 -----보의 제공. 교육 및 홍보사업 2. (생 략) 2. (현행과 같음) 3.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3. ----- 정 정치 • 경제 • <u>사회적</u> 파급영향 치·경제·사회적 -----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와 관심 을 높이고, 저출산·고령화 대 ---- 저출산·고령화 ------응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유도 하기 위한 "인구의 날"행사 개최 4. 출생아의 부모 등에게 출산 축 <삭 제> 하선물 지원 5. 출생아가 있는 가정(이하, "출산 5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정"이라 한다)의 산후조리 비 용 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 강관리사 이용료의 일부 지원. 이때 지원율은 총서비스 이용료 의 최대 90%를 초과할 수 없다. 6. 새생명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의 노고를 격력하기 위하여 "출산 가정 방문의 날"지정 운영 5.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를 위 <신 설>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제9조의2(출산장려 지원사업) ① 시 <신 설> 장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줄 산가정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

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1. 출생아의 부모 등에게 출산 축 하선물 지원
- 2. 출생아가 있는 가정(이하 "출산 가정"이라 한다)의 산후조리 비 용 경감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 강관리사 이용료의 일부 지원
- 3. 임신 축하 분위기 조성을 위해임신 확진비 지원
- 4.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을 위해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에 기저귀 구입비 지원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출산 축하선물 지원 :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는 출산가정
- 2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 지원: 산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3. 임신 확진비 지원 : 산모가 시 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4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: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
-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은 다음

 각 호와 같다.
- 1. 출산 축하선물 지원 : 100천원 <u>상당</u>
- 2.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료

지원 : 서비스 이용료의 최대 9 0%까지 지워

- 3. 임신 확진비 지원 : 임신 확진 을 위한 검사비 최대 40천원까 지지원
- 4.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저귀 구입비 지원 : 만2세까지 월 64 천원 지원

부칙

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및 제5호의 출산장려사업은 2018 년 1월 1일 이후 출산가정부터 적 용한다.

② 종전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분 할하여 출산장려금을 지급받고 있는 출산가정도 이 조례 제3조의 적용을 받는다.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8년 1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①제9조제1항제4호 | 제2조(적용례)①제9조의2제1항제3 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 례 시행 전인 2020년 1월 1일 이 후 출생아 및 임신확진자부터 적 용한다.

<삭 제>